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로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 1.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에 관한 사항
- 2.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 3. 만해 한용은 순례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지역문화 사업의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 5. 만해 한용운 관련 학술세미나,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
- 6. 만해축전·역사인물축제·다례제 등 문화행사 협력에 관한 사항
- 7. 만해 한용운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둔다.

- ②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의 소속 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치단체 및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자치단체 및 위원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
- 제9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회비) ① 협의회의 재원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비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 1,000,000원과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③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지출) ① 회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제출한다.
 -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 2.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 제14조(회계) ①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간사가 속한 자치단체의 업무담당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비집행 상황은 회계결산감사를 거쳐 매년 총회에서 보고하다.
- 제15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안 제3조 관련)

지 역		지 자 체 명		
서울	な服子	(1919) 3.1운동시 수감, 서대문감옥에서 일본검사의 심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기초하여 제출	서대문형무소	독립민주축제, 삼일절기념행사
	성북구	(1933) 박광, 방응모 등의 도움으로 심우장 건립 (1937) 광복운동의 선구자 일송 김동삼의 유해를 심우장에 모셔 장례를 지냄 (1944) 심우장에서 입적	심우장	만해 한용운 추모다례재 (6.29) 탄신일 기념 문 학 축 전 (8.29)
충청 남도	홍성군	(1879) 충남 홍주(현재 홍성군)에서 출생	만해생가지	만해 한용운 다례제(6.29), 역사인물축제
강원도	인제군	(1905) 백담사 전영제(全泳灣) 스승에게 수계(受戒) (1917) 오세암에서 좌선하던 중 바람에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진리를 깨치고, [오도송] 남김 (1925) 오세암에서 『십현담주해』 및 『님의 침묵』 탈고	백담사	만해축전, 만해대상시상식
	속초시	(1921) 신흥사 승려로 원적을 둠	신홍사	